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응급이송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0217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은호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응급이송통합관리시스템 구축	3

I. 개요

1.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0217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윤준병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6. 7. 29.
- (3) 회 부 일 : 2026. 7. 3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는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응급환자의 상태와 이송 중 응급 처치 내용 등을 미리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 및 수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는 이른바 ‘응급실 뱅뱅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실제로, 현장 구급대원과 응급의료기관 간에 구급차의 실시간 위치, 이동 경로, 환자의 상태 및 응급실 병상·의료진 현황 등의 핵심 정보가 실시간으로 상호 공유되지 못해 유기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하여

이송자와 응급의료기관 간에 응급환자 이송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응급이송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송 장치 및 통신체계 등을 구축·운영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안전한 이송 및 수용 체계를 확립하고 국민의 생명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4 신설 등).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응급이송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하여, 응급환자 이송자와 응급의료기관 간에 구급차등의 실시간 위치 정보,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상태 및 이송 중 실시한 응급처치의 내용에 관한 정보,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능력에 관한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응급이송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려는 것임 (안 제48조의4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8조의2(수용능력 확인 등) ①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구급차등의 운전자와 제48조에 따라 구급차등에 동승하는 응급구조사, 의사 또는 간호사를 말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응급환자의 상태와 이송 중 응급처치의 내용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의2(수용능력 확인 등) ① -- ----- ----- ----- -----말한다. 이하 <u>같다</u> ----- ----- ----- ----- -----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48조의4(응급이송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와 응급의료기관 간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응급이송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구급차등의 실시간 위치 및 이동 경로에 관한 정보 2.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상태 및 이송 중 실시한 응급처치의 내용에 관한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 식별정보를 포함한다) 3. 응급의료기관의 위치, 응급실 병상·의료진 현황 등 응급환자의 수용능력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구급차등의 운전자와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및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응급이송

현행	개정안
	<u>통합관리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 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전송하여야 한다.</u> <u>③ 구급차등의 운용자와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송 장치 및 통신체계 등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u> <u>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구급차등의 운용자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전송 장치 및 통신체계 등을 구축·운영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u> <u>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이송통합관리시스템을 응급의료정보통신망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u> <u>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이송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누출·변조·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근권한의 관리, 정보의 암호화, 접속기록의 보관 및 그 밖에 정보보안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u>

현행	개정안
제6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의4. (생략) <u><신설></u> <u><신설></u> 5. ~ 7. (생략) ② . ③ (생략)	<u>여야 한다.</u> ⑦ <u>응급이송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자, 구급차등의 운전자,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 및 응급의료기관의 종사자는 제6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u> ⑧ <u>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전송의 범위·기준·방법과 그 밖에 응급이송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62조(과태료) ① ----- ----- -----. 1. ~ 4의4. (현행과 같음) 4의5. <u>제4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응급이송통합관리시스템에 전송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전송한 자</u> 4의6. <u>제48조의4제7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u> 5. ~ 7.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이송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응급환자 이송자와 응급의료기관 간에 ① 구급차등의 실시간 위치 및 이동 경로에 관한 정보, ②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상태 및 이송 중 실시한 응급처치의 내용에 관한 정보, ③ 응급의료기관의 위치, 응급실 병상·의료진 현황 등 응급환자 수용능력에 관한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 구급대원 등 응급환자 이송자와 응급의료기관이 보다 유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도록 하는 등 응급의료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보임.

- 현재 소방청 및 보건복지부는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부처별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소방청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119법”)」 제10조의2 제5항1)에 근거하여 ‘119구급 스마트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임.

- 동 시스템은 현장 구급대원이 환자의 상태·중증도 및 응급처치 내용 등 정보를 119구급상황관리센터(소방청)·광역응급의료상황실(복지부)·의료기관 등에 공유하고,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환자정보를 확인한 후 수용 가능 여부를 회신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음²⁾.

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 ⑤ 소방청장은 응급환자의 이송정보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6호의 응급의료 전산망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중앙응급의료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6.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관리·운영과 그에 따른 업무

- 소방청은 2026년도 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을 통해, 향후 구급대와 의료기관 간에 응급환자 상태 등 정보, 병원 수용 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할 예정임.

□ 또한,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제15조제1항³⁾에 근거하여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 중에 있음(상세 현황 [참고]).

-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은 실시간 가용 병상 수, 중증응급질환 수용 가능 정보 등 응급의료 관련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응급의료자원정보시스템(EMRIS)’,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사이트’, 민간 구급차 출동·처치기록지 및 119 구급활동일지를 수집하는 ‘출동 및 처치기록지(이송환자기록) 시스템’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서 응급이송통합관리시스템을 응급의료정보통신망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안 제48조의4제5항), 개정안에 따른 응급이송통합관리시스템과 「119법」 및 「응급의료법」에 따른 기존 정보시스템들과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법체계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119법」 또는 「응급의료법」의 정보시스템 관련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입법 취지를 달성하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동 시스템은 이와 같은 구급대원의 현장 활동 지원 외에, 전국 소방본부 상황실에서 신고접수 시 생성되는 재난 데이터를 관계 부처에 연계하는 재난대응 역할도 수행함.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에게 효과적인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수집, 처리, 분석 및 제공 등을 수행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이하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업무
2. 제2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업무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 또한, 실시간으로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권역응급의료상황센터(보건복지부)⁴⁾ 및 119구급상황관리센터(소방청)에서 이송·전원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이송·전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개정안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윤의원 대표발의, 제13901호, 발의일 2025. 11. 4.)」이 발의되어 있으므로, 법안 심사 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송·전원정보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는 응급의료기관의 진료 기능, 응급의료기관의 실시간 가용 시설·인력·장비 및 응급환자 진료 능력, 응급의료기관의 수용불가 사전고지 여부 및 사유 등 임(김윤의원안 제15조의4 신설).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적정병원으로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응급환자의 상태와 응급의료기관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매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나, 현재의 기술적·행정적 수준에서 개정안에 따른 기능을 구현하는 것은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신중 검토 필요

□ (소방청) 구급차등의 실시간 위치 및 세부 이동 경로는 응급의료 기관이 환자의 수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거나 필요한 의료자원을 사전에 준비하는 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정보로 보기가 어려움

4)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 및 권역응급의료상황센터는 김윤의원안에 의하여 설치되는 기관임(김윤의원안 제25조의2 신설).

(안 제48조의4제1항제1호 삭제 의견). 또한, 기존 119구급 스마트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과태료 규정(안 제62조제1항제4호의5)는 삭제 의견

- ((사)대한응급구조사협회) 별도의 응급이송통합관리시스템을 신설하기에 앞서, 현행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의 현행 정보시스템 및 응급의료자원 관련 정보의 공유 제도 등을 상호 연계·보완하는 방식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신중 검토 필요

문 의 처
02)6788-5509

【참고】	응급의료통합정보망 구축 및 운영 현황
-------------	-----------------------------



자료: 보건복지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자료